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김선갑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
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2016.1.19일 「하천법」 개정 당시
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(법 제89조)이
삭제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해
서울특별시 하천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시 허가수수료 징수에
관한 조항(조례 제11조)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

아무쪼록 도시안전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